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상 임 위 원 회

## 결 정

제 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다.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라.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에서의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며,

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2.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의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4.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별지 기재와 같음),

가.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합숙소에서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 이 유

### I. 권고의 배경

2019년 1월, 쇼트트랙 스케이팅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심○○ 선수가 오랜

시간동안 조○○ 코치로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려 왔음을 폭로하였다. 이후 유도, 태권도, 정구, 양궁 등에서도 스포츠 미투(Me Too)가 이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스포츠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 등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널리 알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2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하였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2019년에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인권침해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성)폭력과 통제 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제37조 제2항,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5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를」 제18조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 Ⅲ.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대한체육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6,744명이다. 운영되고 있는 팀은 총 927개로, 소속별로 살펴보면 지자체가 512개(55.2%)로 가장 많고, 시도 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 248개(26.8%), 일반기업 75개(8.1%), 공공기관 61개(6.6%), 기타 30개(3.2%), 협회·연맹 1개(0.1%) 순이다.

### Ⅳ.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공적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4,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선수들은 폭력,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불합리한 근로계약 관행과 처우 등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 1. 소속팀 내 언어적 폭력 피해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욕, 비난, 헐박 등의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자는 33.9%(1,251명 중 424명)이며, 이중 여성 선수가 37.3%(230명)로 남성 선수 30.5%(194명) 보다 높았다. 언어적 폭력의 가해자는 감독(55.0%), 선배 선수(51.9%), 코치(4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

성 선수는 선배(57.0%)에게, 남성 선수는 감독(57.7%)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적 폭력 발생장소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88.7%)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숙소(47.6%), 회식자리 (17.2%) 순으로 나타났다.

## 2. 소속팀 내 신체적 폭력 피해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팀 내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15.3%(1,251명 중 192명)이며, 피해의 구체적 내용은 머리박기, 옆드려뺨치기 등의 신체적 폭력이 106명(8.5%), 계획에도 없는 과도한 훈련이 89명(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66명(5.3%), 운동기구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57명(4.7%)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의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도 8.2%(1,251명 중 102명)로 나타나 신체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 폭력 피해 경험은 남성 선수가 28.3%(180건)로 여성 선수 23.7%(146건) 보다 다소 높았으며, 개인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에서 피해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체 폭력의 가해자로 남성 선수는 선배 선수(58.8%)가, 여성 선수는 코치(47.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체 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운동을 연습하는 장소인 운동장 혹은 체육관(73.1%)이 가장 높았으며, 합숙소(44.5%), 운동부실(15.4%), 경기장(11.5%) 순으로 나타났다.

## 3. 소속팀 내 성희롱 등 피해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운동 중 성희롱 피해 경험은 309건으로 이 중 여성 선수의 비율이 73.8%(228건)로 남성 선수 26.2%(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선수들이 경험한 성희롱 피해의 구체적 내용은 불필요한 신체접촉(8.4%, 52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등(5.5%, 34건), 특정 신체부위, 외모 등에 대한 성적 농담(10.5%, 65건), 듣고 싶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 비유 등(7.6%, 47건),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성희롱(3.8%, 24건)이었다. 같은 항목들에서 남성 선수들은 2.2~3.1% 비율로 나타나 성희롱 피해에 있어 여성 선수와 남성 선수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여성 선수의 경우 남자 감독, 남자 코치, 여자 선배 순이었으며, 남성 선수는 남자 선배, 남자 감독, 남자 코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특정한 신체 부위의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한 성적 농담과 음담패설, 성적 비유 등의 성희롱의 경우 여성 선수는 여자 선배(41.5%)에게, 남성 선수도 남자 선배(70.5%)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동성 간 위계에 의한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 및 대학생 학교운동부 시기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시기에 성희롱 피해 빈도가 더 높았으며, 직장경기운동부 시기에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주요 장소는 훈련장 및 경기장(213건)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숙소(137건), 회식 자리(51건), 라커룸(28건) 순이었다.

아울러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결혼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대회 출전 선수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종용하는 등 여성 선수들이 불안한 운동 환경에 놓여 있다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 4. 소속팀 내 성폭력 피해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은 52건으로 성희롱 피해와 마찬가지로 여성 선수의 비율이 71.1%(37건)로 남성 선수 28.8%(15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내용은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는 성폭력(3.2%, 21건), 강제 키스나 포옹 등(2%, 13건), 신체 부위 몰래 또는 강제 촬영(1%, 7건), 성관계 요구(0.7%, 5건), 강간(0.4%, 3건)순이었다.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여성 선수의 경우 남자 감독 37.8%(37명 중 14명)과 남자 코치 27%(37명 중 10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동성인 여자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도 18.9%(37명 중 7명)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선수의 경우 성폭행 가해자가 남자 선배 46.7%(15명 중 7명), 남자 동료선수 40%(15명 중 6명) 등 전부 동성으로 나타나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동성 간 피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19건), 숙소(22건), 회식자리(10건) 순이었으며, 종목에 따른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개인 종목이 단체 종목보다 높았다.

## 5.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생활 실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86.4%(1,251명 중 1,081명)가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숙 생활경험의 이유로는 훈련에 집중(42.8%), 경기력 향상에 도움(34.1%), 팀워크를 위해서(31.5%) 등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반면에 소속팀 내부 지침으로 인한 강제(29.3%)와 지도자가 원해서(19.4%) 등 합숙소 입퇴소에 대하여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숙소 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의견(4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외출·외박 통제(31.5%), 혼자만의 시간 부족(22.0%), 운동 이후 자유 시간 부족(16.5%)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선수가 지도자와 숙소를 공유하는 불편함으로 훈련시간 이후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위계적 선후배 문화로 합숙소에서의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은 후배가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6.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불공정 계약 실태

심층면접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일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지만 본인의 연봉은 물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하는 등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협상이 아닌 지도자(감독)에 의해 연봉, 근로조건 등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근로 재계약 여부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없는 등 여러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그간 선수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감독에게 주어져 있어 감독과 선수 간 권력적 관계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V.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 1. 선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이행방안 마련

### 가. 인권보장의 국가적 노력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의 평등 및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1조)와 신체의 자유(제12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은 스포츠 영역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인권보장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선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이행방안 마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피해 등은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이를 구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행동규범, 훈련장 및 숙소생활, 인권의식 및 젠더 감수성, 인권침해 중재 등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심리·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인권상황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장 시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0. 2.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제18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여(제18조의6)하고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020. 8. 5.)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에 대한체육회 등에서 실시한 스포츠인권 교육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동 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스포츠인권 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 수립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들이 경험한 다수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수 개인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임신 계획 등에 따른 성차별 사례는 남성 선수보다 여성 선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성인 여성 선수가 보장받아야 하는 ‘건강 보호에 대한 권리와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2세 출산을 넘어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그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고,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도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결혼한 여성 선수의 모성 보호를 위한 관련 세부규칙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의 모성보호 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종목에서의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심층면접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일부는 본인의 급여와 근로 조건에 대한 세부내용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도자(감독)에 의해 결정되고, 선수가 계약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 없이 서명을 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 후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관계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계약관계 상 선수가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 제도와 관련하여 계

약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 폐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인권침해 환경 개선

##### 가. (중장기) 통제된 합숙소 폐지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중 일부는 합숙소 입퇴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즉 생활 방식의 결정 등에 있어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결정·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합숙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일상생활 등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휴식권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합숙생활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도 외부와 차단된 통제적, 위계적 생활환경 특성을 지닌 합숙소 내에서 일상화된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합숙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통제된 합숙소는 즉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합숙소는 원거리 통근 또는 저연봉 선수 등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주체는 소속팀이 소유하고 있는 관사 등을 활용하여 이용 희망 선수에 한하여 숙소를 제공하거나, 기존 합숙소를 선수생활관(필요시 오전·오후 혼

련 사이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합숙소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나. (단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정 등을 통한 인권침해 환경 개선

합숙소 완전 폐지 이전 과도기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체력관리와 기량향상,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주체가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합숙소 생활에 대한 선택은 반드시 선수 본인이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숙소 내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는 선수 1인 1실(또는 2인 1실) 형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지도자(감독, 코치)가 선수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선수들은 훈련시간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일반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휴식권을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지도자의 합숙소는 반드시 선수 합숙소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도자가 선수의 개인공간을 방문하여 사생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바, 합숙소 생활에 있어서의 지도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합숙소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주체는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합숙소 내 선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합숙소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2020. 6. 23.

위원장    최 영 애

위원    정 문 자

위원    이 상 철

위원    박 찬 운

<별지>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 현황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 강동구청장, 서울 광진구청장, 서울 구로구청장, 서울 금천구청장, 서울 노원구청장, 서울 도봉구청장, 서울 동작구청장, 서울 성북구청장, 서울 송파구청장, 서울 은평구청장, 서울 종로구청장, 서울 중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인천 남동구청장, 인천 계양구청장, 인천 미추홀구청장, 인천 부평구청장, 인천 서구청장

대구 남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 대구 달성군수, 대구 동구청장, 대구 북구청장, 대구 서구청장, 대구 수성구청장, 대구 중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대전 유성구청장

울산 울주군수, 울산 동구청장, 울산 남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경기 가평군수, 경기 과천시장, 경기 고양시장, 경기 광명시장, 경기 김포  
 시장, 경기 남양주시장, 경기 부천시장, 경기 성남시장, 경기 수원시장, 경  
 기 시흥시장, 경기 안산시장, 경기 안성시장, 경기 안양시장, 경기 양주시  
 장, 경기 양평군수, 경기 여주시장, 경기 연천군수, 경기 오산시장, 경기  
 용인시장, 경기 의정부시장, 경기 이천시장, 경기 파주시장, 경기 포천시장,  
 경기 평택시장, 경기 하남시장, 경기 화성시장  
 강원 강릉시장, 강원 고성군수, 강원 동해시장, 강원 삼척시장, 강원 속초  
 시장, 강원 양구군수, 강원 양양군수, 강원 영월군수, 강원 원주시장, 강  
 원 인제군수, 강원 정선군수, 강원 철원군수, 강원 춘천시장, 강원 태백시  
 장, 강원 평창군수, 강원 홍천군수, 강원 화천군수, 강원 횡성군수  
 충북 괴산군수, 충북 단양군수, 충북 보은군수, 충북 옥천군수, 충북 영동  
 군수, 충북 음성군수, 충북 청주시장, 충북 충주시장, 충북 제천시장, 충  
 북 진천군수, 충북 증평군수  
 충남 계룡시장, 충남 공주시장, 충남 금산군수, 충남 논산시장, 충남 당진  
 시장, 충남 부여군수, 충남 서산시장, 충남 서천군수, 충남 아산시장, 충  
 남 예산군수, 충남 태안군수, 충남 보령시장,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청양군  
 수, 충남 홍성군수  
 전북 고창군수, 전북 군산시장, 전북 김제시장, 전북 남원시장, 전북 무주  
 군수, 전북 부안군수, 전북 순창군수, 전북 장수군수, 전북 전주시장, 전북  
 완주군수, 전북 익산시장, 전북 임실군수, 전북 정읍시장, 전북 진안군수  
 전남 강진군수, 전남 고흥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광양시장, 전남 구례  
 군수, 전남 나주시장, 전남 목포시장, 전남 무안군수, 전남 보성군수, 전남  
 순천시장, 전남 여수시장, 전남 영암군수, 전남 완도군수, 전남 장성군수,  
 전남 함평군수, 전남 해남군수, 전남 화순군수  
 경북 경산시장, 경북 경주시장, 경북 구미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북 문경  
 시장, 경북 상주시장, 경북 성주군수, 경북 안동시장, 경북 영주시장, 경북



영천시장, 경북 예천군수, 경북 울진군수, 경북 의성군수, 경북 칠곡군수, 경북 포항시장

경남 거제시장, 경남 김해시장, 경남 남해군수, 경남 밀양시장, 경남 사천시장, 경남 양산시장, 경남 의령군수, 경남 진주시장, 경남 창녕군수, 경남 창원시장, 경남 통영시장, 경남 함안군수, 경남 합천군수

제주 서귀포시장, 제주 제주시장

□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대구광역시체육회장, 광주광역시체육회장, 대전광역시체육회장, 경기 광명시체육회장, 경기 김포시체육회장, 경기 부천시체육회장, 경기 시흥시체육회장, 경기 안양시체육회장, 경기 양주시체육회장, 경기 용인시체육회장, 경기 의왕시체육회장, 경기 이천시체육회장, 경기 화성시체육회장, 강원도체육회장, 강원 강릉시체육회장, 충청북도체육회장, 충청남도체육회장, 경상북도체육회장, 경북 구미시체육회장, 경북 포항시체육회장, 경북 김천시체육회장, 경북 안동시체육회장, 경북 영천시체육회장, 경상남도체육회장

□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원랜드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대전도시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은행 회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광주도시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대구도시공사 사장,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부산교통공사 사장, 부산지방공단 이사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한국마사회(렛츠런) 회장, 부산시설공단 이사장